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31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서관태,이창희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안 담당변호사 조민

변론 종결 2020. 4. 1

판결 선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2011. 6. 10. 접수 제270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원고의 아들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E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의 딸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의 인감과 신분증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바, 이는 원인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사기 또는 착오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대출금채무를 피고들이 변제하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를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1다72029판결 등 참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책임이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현장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2011. 6. 7. 체결되었고 이 사건 이전등기는 2011. 6. 10. 마쳐졌는데,원고가 이 사건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약 8년간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피고들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담부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점,④ 원고와 피고들은 모녀지간으로 특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도 재산을 증여할만한 인적관계에 있었던 점,⑤ 원고가 피고들에게특정한 부담의 이행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승현

별지